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 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학사·석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유용(부당회수 및 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전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취득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는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참

여종료 또는 연구종료 후에도 기밀로 유지해야하며, 해당 연구과제 참여 종료(또는 중단)되는 즉시 모든 관련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

5.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공동관리 등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해당 사항을 연구개발 기관에 고지

제6조(연구환경 조성)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참여연구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명시 금지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에
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이내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
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
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
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
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여 연구
참여도 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
비를 이체하는 등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
고,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사
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8호 서식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
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인권 및 권익보호) ①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간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
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 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등 기관 내 관련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연구과제) 참여 (신규/변경) 협약서

연구책임자 ○○○와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과정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소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사업(연구과제) 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나. 참여과제 :

다. 담당업무(역할) :

라. 월별 인건비 및 참여율 : 월 원(세금포함)(%)

※ 참여중단·종료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계산하여 지급함.

마. 사업(연구과제)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학과명)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협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사업(연구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사업(연구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업(연구과제) 참여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사업(연구과제)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사업(연구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 바. 학생연구자는 사업(연구과제)책임자가 사업(연구과제)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 학생연구자는 동 사업(연구과제) 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연구과제)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아. 사업(연구과제)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연구과제) 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개발기관 장 : (서명)

붙임 : 학생연구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해당연도 협약 기간 전체로 설정을 권고함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연구자 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본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연구과제)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연구과제) 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 사항 및 중요사항을 사업(연구과제) 참여기간은 물론 사업(연구과제) 참여가 종료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연구자로서 사업(연구과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산학협력단 및 사업(연구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것이며, 사업(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자로서 성실히 사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윤리를 준수한다.
3. 사업(연구과제) 참여 중의 모든 발명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사업(연구과제)책임자에게 이를 공개 또는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